

(주)이랜드파크 켄싱턴호텔앤리조트 지류이용권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이랜드파크(이하 '발행자'라 함)가 발행한 이용권을 그 소지자(이하 '고객'이라 함)가 사용함에 있어 고객과 발행자 및 발행자와 가맹 계약을 맺은 자(이하 '가맹점'이라 함) 간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적용의 범위)

①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이용권은 지류로 발행된 다음의 이용권과 같다. 단, 고객에게 순수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이용권에 무상제공임을 표시하여야 함)에는 이 약관은 적용되지 않는다.

② 분양회원에게 제공되는 이용권은 분양회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혜택(이용권에 무상제공임을 표시하여야 함)으로 보아 이 약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금액이용권 : 이용권의 권면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함)을 제공받을 수 있는 이용권
2. 물품이용권 : 이용권의 권면에 기재된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이용권
3. 용역이용권 : 이용권의 권면에 기재된 용역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용권

제3조 (정보제공)

① 발행자는 이용권과 관련한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금액이용권의 경우, 발행자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 이용권의 사용과 관련된 중요 정보 항목을 이용권 권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1. 발행자
2. 구매가격 (할인된 경우 할인율 및 할인금액)
3. 권면액
4. 유효기간 및 제공가능기간
5. 사용조건 (사용가능금액, 제공 물품 등)
6. 사용 가능 영업장
7. 환불 조건 및 방법
8. 사용 후, 잔액의 환불 기준
9.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이용권에 대한 처리기준
10. 이용권의 사용과 관련한 제한 사항(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11. 지급 보증 또는 피해 보상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12. 소비자 피해발생시 연락할 관련 전화번호 등

※ 물품 이용권 및 용역 이용권의 경우, 발행자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 이용권의 사용과 관련된 중요 정보 항목을 이용권 권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1. 금액 이용권 권면 표시사항 1호, 4호부터 12호까지의 사항
2. 제공되는 물품 및 용역에 관한 사항 (수량 등)

- ② 발행자는 시각장애인이 본조 제1항에 따른 중요정보 사항에 대하여 점자 표기, QR코드 표시 등 그 내용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제4조 (이용권의 사용)

- ① 고객이 이용권 권면금액 또는 수량의 범위 내에서 물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사전 예약이 필요한 상품의 경우에는 예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즉시 해당 물품 등을 제공한다.
- ② 고객은 발행자 또는 가맹점의 온·오프라인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가격 할인 기간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단, 미리 이용권면에 기재한 특정 영업장(할인영업장 제외) 또는 물품 등에 대하여 이용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고객에게는 현금거래자보다 우선하여 물품 등을 제공한다. 단, 사전예약자가 있는 경우 사전 예약자에게 물품 등을 우선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제공불능 등 반환)

- ① 이용권에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제공에 필요한 통상적인 기간보다 현저히 지체되는 경우 고객의 요구에 따라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기준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반환한다.
 - 1. 금액이용권: 미사용 잔액
 - 2. 물품이용권·용역이용권: 권면에 금액이 표시된 경우 권면금액, 금액 표시가 없는 경우 정상 판매가격
- ② 물품 또는 용역이용권에 따라 제공되는 물품 등의 품질은 이용권면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다. 단, 별도 기재가 없고 품질에 차이가 나는 물품 등의 경우 기준금액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한 적정 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 (이용권의 훼손)

- ①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훼손된 이용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단,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고객이 부담한다.
- ② 이용권이 훼손되어 발행자의 이용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이용권의 재발급 및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발행자의 이용권임을 알 수 있으나 이용권의 종류, 금액, 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고객은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 가격의 이용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 ③ 물품 등의 금액 또는 수량이 전자기적 방법으로 입력된 이용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은 발행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판독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 다른 이용권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제7조 (소멸시효 및 기간의 구분)

- ① 이용권을 발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고객은 발행자 등에게 물품 등의 제공, 환불 및 잔액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 ② 유효기간은 이용권 권면에 표시된 기간으로서, 고객이 제8조의2에 따른 환불을 신청할 수 있

는 기간을 말한다.

- ③ 유효기간 내에 고객은 발행자에 이용권의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발행자는 3개월 단위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최초 발행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까지만 연장이 가능하다.
- ④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환불·반환은 이 약관에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 ⑤ 제공가능기간은 유효기간과 별개로, 이용권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제1항의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고객이 발행자 또는 가맹점에 대하여 이용권에 따른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금액이용권의 사용을 포함)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 ⑥ 고객은 제공가능기간 내에는 유효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 1. 금액이용권: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유효기간 내와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다.
 - 2. 물품이용권·용역이용권: 유효기간 경과 후에는 권면에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 전부의 제공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일부 제공 또는 분할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 ⑦ 다만, 제5조에 따른 반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제5조를 적용한다.

제8조 (일부 사용한 이용권의 잔액 반환)

- ① 이용권은 현금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단, 제5조, 본 조 또는 제8조의3에 따라 발행자 또는 가맹점이 금전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권면금액이 표시된 금액이용권의 경우, 이용권 권면금액(여러 장 동시 사용 시 총 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권 이하 이용권은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한다.
- ③ 본 조는 금액이용권에 한하여 적용되며 물품·용역 이용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8조의2 (유효기간 내 환불)

- ① 본 조는 유효기간 내 이용권의 환불에 관하여 정한다.
- ② 고객이 이용권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이용권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고(용역이용권의 경우 예약 확정 등으로 이용 개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포함), 이용권이 훼손되지 아니한 상태로 이용권 실물을 제출하여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발행자는 고객이 지급한 구매대금을 전액 환불한다.
- ③ 제5조에 따른 반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 경과 여부와 무관하게 제5조를 우선 적용한다.
- ④ 고객이 제2항의 기간(수령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유효기간 내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발행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 1. 금액이용권: 제8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한다. 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발행자는 환불을 거절할 수 있다.
 - 2. 물품이용권·용역이용권
 - 가. 제5조의 사유(발행자 또는 가맹점의 귀책으로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지체되는 경우 등)가 있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반환한다.

나. 해당 이용권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고(용역이용권의 경우 예약 확정 등으로 이용 개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포함), 이용권이 훼손되지 아니한 상태로 이용권 실물을 제출하여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발행자는 고객이 지급한 구매대금의 90%를 고객에게 환불한다.

- ⑤ 환불(또는 정산)은 고객이 이용권 실물을 제출한 후 처리하며, 발행자는 부정사용 방지 및 환불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본인 확인 및 환불 수령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환불 신청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만 할 수 있으며, 접수 기준은 각 호와 같다. 단, 관계 법령에 따른 청약철회 등은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 1. 고객센터 유선전화: 고객센터 상담원이 환불 접수를 완료하고 접수번호를 부여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 2. 홈페이지 고객문의: 고객이 환불 신청 내용을 제출하고 발행자가 접수 완료(접수번호 부여 또는 접수완료 안내)를 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 ⑦ 환불금은 원칙적으로 고객이 이용권 구매 시 사용한 결제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한다. 단, 동일한 결제수단으로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발행자는 고객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불할 수 있다.
- ⑧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용권에 대한 환불·반환은 이 약관에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금액이용권의 유효기간 경과 후 미사용 상당액 반환은 제8조의3에 따르며, 이용권의 사용(제공)은 제7조 제5항 및 제6항의 제공가능기간에 따른다. 단, 제5조에 따른 반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제5조를 적용한다.

제8조의3 (유효기간 경과 후 환불)

- ① 금액이용권
유효기간이 경과한 금액이용권에 대하여 제7조의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고객이 미사용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는 미사용 상당액의 90%를 고객에게 반환한다. 단, 고객은 반환을 요구하는 대신 제7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금액이용권을 제공가능기간 내 사용할 수 있다.
- ② 물품이용권·용역이용권
유효기간이 경과한 물품이용권·용역이용권에 대하여 제7조의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고객이 해당 이용권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고(용역이용권의 경우 예약 확정 등으로 이용 개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포함), 이용권이 훼손되지 아니한 상태로 이용권 실물을 제출하여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발행자는 고객이 지급한 구매대금의 90%를 고객에게 환불한다.
- ③ 본 조에 따라 반환 또는 환불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미사용 이용권 실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행자는 부정사용 방지 및 반환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본인 확인 및 반환 수령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환불금(또는 반환금)은 원칙적으로 고객이 이용권 구매 시 사용한 결제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한다. 단, 동일한 결제수단으로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발행자는 고객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지급보증 등)

이용권은 별도의 지급보증 및 피해 보상 보험 계약 없이 (주)이랜드파크의 신용으로 발행한다.

제10조 (발행자의 책임)

이용권 이용과 관련된 고객의 권리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발행자가 진다.

제11조 (분쟁 해결)

이 약관과 관련하여 발행자 등과 고객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에서 제기한다.

제12조 (기타)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약관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발행자 또는 가맹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시행일자) 본 약관은 2026년 6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